

예산총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9,795,677	12,293,870
일반회계	365,812,308	10,974,369
특별회계	43,983,369	1,319,501
공기업특별회계	11,295,292	338,85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295,292	338,859
기타특별회계	32,688,077	980,64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29,100	36,873
자활기금특별회계	1,943,116	58,293
수질개선특별회계	25,730,041	771,9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3,383	1,00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073,860	62,216
기반시설특별회계	435,500	13,065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54,000	10,620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889,077	26,672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67,49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